

日本 職務發明制度 및 國有特許處理規程 <抄>

< I >

- ◎…… 本會는 1974年 4月 30日字 特協資料 15號로서 國內外「職務發明制度」(附: 主要……◎
- ◎……各國特許出願費用一覽)를 油印하여 會員에게 提供한 바 있다. 同油印資料 중에 日……◎
- ◎……本國「工業技術院 職務發明規程」은 그 후에 改正된 규정이 入手되었으므로 이를……◎
- ◎……譯載기로 한다. 아울러 日本에서 현재 適用하고 있는 직무발명의 基本概念을 비……◎
- ◎……另해서 國家公務員 職務發明에 관한 补償金請求 및 支拂方法 · 同支拂要領 · 國有……◎
- ◎……特許實施契約書 · 同契約說明書 · 同實施料算定方式 등을 連載한다. ………………◎

① 職務發明의 基本概念

職務發明인 從業員發明의 基本은 發明者主義를 採用하고 있으며 理念은 發명을 個人의 知的 產物로 보고 權利는 原始的으로 發명자의 것으로 인정하되 出願은 使用者나 發明자가 다같이 할 수 있으나 發明代價는 补償하게 되어 있다.

또한 직무발명의 定義는……

① 一般的으로는 組織의 組織員이 이룩한 發명으로서 그 發명이 회사의 業務範圍에 屬하고 또한 그 發명을 하기에 이른 行爲가 그 조직원의 조직내에서의 現在 또는 過去의 직무에 속하는 發명을 말한다.

② 직무발명에 대해 發明자가 特許權을 取得했을 때에는 조직은 그 發명에 대해 無償의 通常實施權을 保有한다.

③ 조직은 직무발명 이외의 發명에 關聯된 特허를 받을 권리 또는 特허권에 대해 豫約承繼할 수는 없다.

④ 조직은 직무발명에 關련된 特허를 받을 권리 또는 特허권에 대하여 契約, 勸務, 規則 등으로서 예약한 경우에는 發明자에 대해서 適當한 대가를 支拂해야 한다 등이다.

② 工業技術院 職務發明規程

(院訓令 第134號 : 1970. 10改正)

第1章 總 則

〈目的〉

第1條 이 規定은 工業技術院의 試驗研究所에서 시험 연구에 從事하는 職員(이하 직원이라 함)이 이룩한 發明의 取扱에 대해 규정하고 그 發明者로서의 權利를

保障함으로써 發명 및 研究意欲의 向上 圖謀를 그 목적으로 한다.

〈定義〉

第2條 이 규정에서 다음에 揭記하는 用語는 다음 정의에 의한 것으로 한다.

1. 業務發明이란 직원이 이룩한 發명으로서 그 内容이 當該發明을 이룩한 직원이 所屬하고 또는 소속한 試驗研究所의 管掌하의 업무 範圍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라 함은 업무발명으로서 당해 發명을 이룩함에 이른 행위가 공업기술원의 시험연구소에서의 당해직원의 現在 또는 過去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3. 發明자라 함은 업무발명을 이룩한 직원을 말한다.

〈權利의 歸屬〉

第3條 國家는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定하는 바에 따라 特허를 받을 권리 또는 特허권을 承繼할 수가 있다.

第2章 届出 및 出願

〈届出〉

第4條 직원은 업무발명을 했을 때는 빨리 그 뜻과 그 發명의 내용을 詳記한 書面 및 意見書를添付하여 자기가 소속한 試驗研究所長(이하 所長이라 함)을 거쳐서 工業技術院長(이하 院長)에게 제출해야 한다.

2. 所장은 前項의 규정에 의한 계출을受理했을 때는 그 계출에 關련된 書類를 권리의 귀속 등에 관한 意見書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出願〉

第5條 원장은 前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한 계출이 있을 때는 당해 계출에 關련된 發명이 직무발명인가를

확인하여 직무발명이라고 인정되었을 때는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가 국가가 승계하는지의 與否를 결정해야 한다.

2. 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권리가 국가가 승계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곧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

〈發明者의 出願〉

第6條 발명자는 원장이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발명자의 발명에 대해 직무발명이 아님을 인정하고 또 특허를 받을 권리를 국가가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가 아니면 특허출원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그 발명이 직무발명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할 때 또는緊急히 특허를 출원할 필요가 있을 때는例外이다.

2. 발명자는 전항의 但書規定에 따라 특허를 출원했을 때는 곧 그 뜻과 그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를複寫하여 그 1부를 첨부, 소장을 거쳐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職務發明審査會에 대한 諮問〉

第7條 원장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출이 있을 때는 그 계출에 관련된 발명이 직무발명인가를 確認하여 직무발명임을 인정했을 때는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가 승계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원장은 미리 직무발명심사회에 자문해야 한다.

3. 직무발명심사회는 전항의 자문을 받았을 때는 그 날부터 3個月 이내에 答申해야 한다.

〈特許權 받을 權利 또는 特許權의 讓渡義務〉

第8條 발명자는 원장이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발명자의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가 승계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그 권리를 국가에 양도해야 한다.

〈通知〉

第9條 원장은 제5조 1항이나 제7조 1항의 인정 또는 결정을 했을 때는 그 뜻을 빨리 그에 관련된 발명자에게 소장을 거쳐서 文書로 통지해야 한다.

第3章 職務發明審査會

〈設置〉

第10條 공업기술원에 직무방명심사회를 설치하고 그庶務는 總務部研究業務課에서 管掌한다.

〈審議事項〉

第11條 직무발명심사회는 제7조 및 제14조에 정한事項外에 원장의 자문에 應하여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組織〉

第12條 직무발명심사회는 會長·副會長 및 委員若干名으로 조직한다.

2. 회장은 원장이 맡아 會務를 總理한다.
3. 부회장은 總務部長이 맡아 회장을 補佐하고 회장이 有故時는 그 직무를 代理한다.
4. 委員은 공업기술원의 各 試驗研究所長이 된다.
5. 발명자는 회장의 許可를 맡아 직무발명심사회에 出席하여 그 발명에 대해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第4章 雜 則

〈補償金請求〉

第13條 원장은 제5조 2항의 특허 출원을 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권리 혹은 특허권을 讓受한 경우에 특허권의 設定登錄 또는 移轉登錄을 받았을 때는 그 발명자에 대하여 그 뜻과 國家公務員의 직무발명에 관한 补償金의 청구 및 支拂方法(特許廳長 通牒 第635號)에 따른 登錄補償金請求書를 제출하도록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異議申請〉

第14條 발명자는 그 발명에 관련되는 제5조 1항 또는 제7조 1항의 인정이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제9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장에게 문서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

2. 원장은 전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직무발명심사회의 會議에 부쳐 事案을 결정하고 그結果를 申請人에게 2개월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秘密의 保持〉

第15條 발명자 및 직무발명심사회의 關係者는 발명의 내용이나 그외에 발명자 및 그 국가의 利害에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期間 중 그 비밀을 保持해야 한다.

〈職務發明이 아닌 業務發明〉

第16條 원장은 제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원장이 직무발명이 아님을 인정한 발명에 대해 발명자로부터 申告가 있을 때는 그 발명이 업무발명인가를 확인하여 업무발명임이 인정되었을 때는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가 승계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제3조, 제5조 2항, 제8조, 제9조, 제13조 및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발명에 대해서 準用한다.

〈實用新案權 및 意匠權에 관한 準用〉

第17條 이 규정은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에 대해서 준용한다.

〈事務의 委任〉

第18條 원장은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출의 수리, 인정, 결정, 출원, 讓受 및 통지에 관한 사무와 이를 사무의 附帶事務의 全部 또는一部를 소장에 위임할 수가 있다.

(계속) 〈C 記〉